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2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6호, 2023. 9. 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art 3 차량용품 1. 차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 인터페이스 5)를 삭제한다.

“6)”을 “5)”로, “7)”을 “6)”으로, “8)”을 “7)”로, “9)”를 “8)”로 한다.

Part 3 차량용품 4. 활주방지장치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 중 “KS C IEC 61373, 철도적용 — 철도차량 장치 — 충격 및 진동 시험”를 신설한다.

5.3.2 시험방법 (1) (나) 중 “KS R 9146”를 “KS C IEC 61373”로 하고, (다) 중 “KS R 9146”를 “KS C IEC 61373”로 한다.

Part 3 차량용품 6. 제동디스크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적합성 평가 1) 중 “제60조제2항”을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4.3 내부 및 표면 특성 중 “표면을 깨끗이 쇼팅한후 디스크 마찰면을제외한 전체면을 방청페인트로 도장”을 “깨끗이 표면처리 ”로 한다.

4.4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 2) 중 “ASTM A 609/A”를 “ASTM A 609”로 한다.

[별첨] 철도차량 제동디스크시험방법 2. 인용표준 중 “EN 10002- 1, Metallic materials . Tensile testing Part 1: Method of test at ambient temperature”를 “ISO 6892-1, Metallic materials — Tensile testing — Part 1: Method of test at room temperature”로, “금속재료 인장시험편”을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으로,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을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으로, “금속재료의 브리넬 경도시험방법”을 “금속 재료의 브리넬경도 시험 방법”으로,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을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으로, “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을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로, “탄소강 및 저합금강 단강품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을 “탄소강 및 저합금강단강품의 초음파탐상검사”로, “철 및 강철의 스파크 방전 원자방출 분광분석 방법”을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으로, “KS D 0026:2002, 철강재료 및 내열 합금의 고온인장 시험방법”을 “KS D 0026, 철강 재료 및 내열 합금의 고온 인장 시험 방법”으로 한다.

5.3.2 시험방법 (2) (가) 중 “EN 10002-1”을 “ISO 6892-1”로 한다.

Part 3 차량용품 7. 제동패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적합성 평가 1) 중 “제60조제2항” 를 “제62조제1항” 로 한다.

[별첨] 철도차량 제동패드 시험방법 2. 인용표준 중 “IEC 62321, Electrotechnical products – Determination of levels of six regulated substances(lead, mercury, cadmium, hexavalent chromium, polybrominated biphenyl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를 “IEC 62321 시리즈,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otechnical products” 로, “계측기기 미보유” 를 “비계장 충격 실험” 으로, “Matériau roulant ferroviaire – Garnitures de frein – Disques en matériaux frittés” 를 “Railway rolling stock. Disk brake linings made of sintered materials” 로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의 승인을 위한 일반조건” 을 “Brakes – Disc brakes and their application – General conditions for the certification of brake” 로, “KRS BR 0007-11(R) 비석면 디스크 브레이크 라이닝” 를 “KRS BR 0025, 철도차량용 제동마찰재” 로 한다.

“KRS BR 0022- 16 전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을 삭제한다.

“KRS BR 0023- 16” 을 “KRS BR 0023,” 로 한다.

4. 일반 및 기술적 요구사항 중 “KRS BR 0007과 KRS BR 0022” 를 “KRS BR 0025” 로 한다.

5.3.2 시험방법 (1) ㉠ 중 “KRS BR 0007” 를 “KRS BR 0025” 로 한다.

(2) 중 “KRS BR 0007과 KRS BR 0022” 를 “KRS BR 0025” 로 한다.

(4) 중 “IEC 62321” 를 “IEC 62321 시리즈” 로 한다.

Part 5 신호통신용품 2. 자동폐색제어장치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1 일반조건 7) 중 “신청자는 자동폐색제어장치의” 를 “신청자는” 으로 하고, “전반에 걸친 위험원을 도출하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능한 제어기를 포함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검증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를 “전반의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및 유지보수성 관리가 KS C IEC 62278에 만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가능한 제어기를 포함할 경우 IEC 62425와 KS C IEC 62279에 만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KS C IEC 62278, IEC 62425, KS C IEC 62279 만족여부 입증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로 한다.

4.2.3 주파수 송수신부 중 “4.2.3 주파수 송수신부” 를 “4.2.3 정보송수신부” 로 한다.

1) 중 “구성된다” 를 “구성되며, 주파수송수신 방식이나 광통신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3)을 삭제한다.

“4)” 를 “3)” 으로, “5)” 를 “4)” 로, “6)” 을 “5)” 로, “7)” 을 “6)” 으로, “8)” 을 “7)” 로 한다.

7) 중 “주파수 송수신부” 를 “정보송수신부” 로 하고, (1) 중 “주파수 송수신부의 전원모듈은 이

중계”를 “전원모듈은 이중계 이상으”로 한다.

8) 중 “이중계”를 “이중계 이상으”로 한다.

“8) 정보송수신부가 주파수 방식일 경우 9)항을, 광통신 방식일 경우 10)항을 적용한다.”를 신설한다.4

“9) 주파수 송수신 방식일 경우 송·수신모듈의 신호레벨을 최대로 조정하였을 경우라도 인접한 주파수대 수신모듈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를 신설한다.

“10) 광통신 방식 (1) 광통신부는 광네트워크 스위치를 이중계 이상으로 구성하고 단일계에 장애발생 시 광네트워크 스위치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다중계 링 네트워크 구조의 광통신망을 구성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Part 5 신호통신용품 3. AF케도회로장치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1 일반조건 8) 중 “신청자는 AF케도회로장치의”를 “신청자는”으로 하고, “전반에 걸친 위험원을 도출하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능한 제어를 포함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검증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를 “전반의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및 유지보수성 관리가 KS C IEC 62278에 만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가능한 제어를 포함할 경우 IEC 62425와 KS C IEC 62279에 만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KS C IEC 62278, IEC 62425, KS C IEC 62279 만족여부 입증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로 한다.

Part 6 전철전력용품 2.장력조정장치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 기계 성능 4) 다) 중 “8.1.1”을 “8.2.1의 하중 인가 방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 차량·부품 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이미 반영된 차상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종합제어장치에서 신호통신시설용품까지 RAMS 적용을 확대하고, 신정부의 규제 혁신을 위해 개최된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제도 개선 회의” 시 건의된 제동디스크 방청페인트 도포 기준을 개선하고, 철도용품 기술기준의 3년 주기 정기 확인과정에서 도출된 참조표준의 개정·폐지현황 및 신기술 적용, 잘못 표기 또는 오류사항 수정, 개선사항 적용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